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. 1. 22 선고 2018가단2948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 중앙회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현

변론 종결 2018. 12. 11

판결 선고 2019. 1. 22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D에게 별 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익산 등기소 2002. 12.13. 접수 제635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D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(2017 차전1300) 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. 2. 16. 위 법원으로부터 ' 38, 962, 418원 및 그중 15, 525, 870원에 대하여 2017 . 2. 16. 부터 2017 . 2. 20. 까지는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%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7. 3. 7. 확정되었다.

나. 피고는 D소유의 별 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익산 등기소 2002 . 12. 13. 접수 제 6355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 라하고,이에 기한 근저당권을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 한다)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는, 피고가 D 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 고, 2002 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약 13, 000, 000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60,(X) 0, 000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은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허위로 마쳐진 것이거나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,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D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.

나. 살피건대, 을 제 1호증의 1, 2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의 사정, 즉 ① D 는 피고에게 60, 000, 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2 . 12.10. 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, ② 위 차용증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점,③ D는 위차용 증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이전인 2011 . 11. 20. 다시 위 금액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점, ④ 원고는 피고와 D가 통정하여 위각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,⑤원고가 제기하는 의문점만을 근거로 처분문서 인위각 차용증의 증명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 사정을 종합하면, 위각 차용증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,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강신영

별지